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1.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종철

가.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관련 정원감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 내용

- 1) 현 정원 1,312명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1,249명으로 63명 감축

 -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2명에서 1,220명으로 62명 감축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축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규정 **【별표1】**, **【별표2】**
-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에 의한 정원감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8년 7월 3일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2명에서 1,220명으로 62명,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을 각각 감축하였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안 제4조 관련 별표 3에서는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으로 정무직 1명과 구본청에 3급 1명, 4급 5명, 5급 31명과 보건소에 4급 1명 5급 9명(계약직 가급 5명), 동사무소에 5급 16명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4급 1명, 5급상당 별정직 2명 등으로 정하고, 6급이하(별정직, 기능직포함) 1,182명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종전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2008년 7월 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안 제1호에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 6급정원을 종전 19%이내에서 21%이내로 할 경우 운영정원은

14명이 증원되고, 안 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 7급정원은 6% 이내에서 10% 이내로 할 경우 운영정원은 14명, 기능직 8급정원은 14%이내에서 30%이내로 할 경우 운영정원은 43명 증원이 가능하나,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에서 정한 직급별정원 책정기준대로 마포구 지방 공무원 정원규칙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되며, 동 조례안에 의하면 우리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여 감축되는 인원은 총 정원(1,312명)의 4.8%에 해당하는 63명이 되겠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축 지침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고, 감축인원 63명 중 32명을 기능직으로 할당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일방적인 감축 등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원 감축 내역[1,312명(현 정원) -63명(감축인원) = 1,249명(확정 정원)]

□직종별 감축 내역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고
	정 원	감축인원	정 원	감축인원	정 원	감축인원	정 원	감축인원	
인 원	1,312	63	968	31	328	32	15	0	1

※ 기능직 32명 : 교환 2명, 운전 10명(방호2 증), 위생 1명, 조무 1명, 지도 20명

□ 일반직 감축 내역(31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인 원	31	2		29		
직렬별(명)		행정 2명	행정 27명(수의 1명 증), 세무 3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49			1,249	
정무직		1			1	
일반직 계		937			937	
3급		1	1			
4급		7	5	1	1	
5급		56	31		9	16
6급 이하 계		873			873	
별정직 계		15			15	
5급 상당		2		2		
6급 상당 이하 계		13			13	
기능직 계		296			29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홍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여권과 및 신청사 추진반을 둔다. 다만,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p> <p>②(생략)</p>	<p>제4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u>홍보과</u>·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전산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p> <p>1.~5.(생략)</p> <p><신설></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공보관광과————— —————.</p> <p>②(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p> <p>1.~5.(개정안과 같음)</p> <p>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중 “홍보과장”을 “공보관광과장”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중 “홍보과장”을 “공보관광과장”으로 한다.</p>